

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 등)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- 1. 기금운용관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(공무원교육원계정),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장(소방학교계정)
- 2. 분임기금운용관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(공무원교육원계정),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학과장(소방학교계정)
- 3. 기금출납원 :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

제11조(사무위임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

- 1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좌 설치에 관한 사항
- 2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
- 3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운용기금에 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설치연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.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본문중 “6급”을 “7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19
----------	-----

2000. 7. .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
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제3차 기획경제위원회
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

가. 제안이유
소방서(동작)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- 나. 주요골자
 - 동작소방서 신설
 - 위 치 : 동작구 신대방동 460-19
 - 관할구역 : 동작구 일원
 -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
 - 관악소방서 : 관악구 일원 (당초 관악구, 동작구 일원에서 동작구 삭제)
 - 동작소방서 : 동작구 일원 신설

다. 참고사항
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

※지방자치법 제104조(직속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·교육훈련기관·보건진료기관·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※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(설치) 특별시·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.

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
 -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신대방동 460번지 19호에 동작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작소방서가 2000년 8월 개설했을 때 동 조례 제25조 제2항 별표1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관서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표에 이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관악소방서의 관할구역중 동작구 일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